

2. 提案說明의 要旨

○提案理由

- 各種 民願手數料率의 調整으로 收入證紙 400원권 700원권이 必要하게 되어 收入證紙 種類에 追加 挿入

○主要骨子

- 安山市 收入證紙 條例 第6條 第1項에 400원권 700원권을 挿入하고
- 自治法規에 漏落된 60원권, 2,000원권 收入證紙를 挿入

3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 要 旨	答 辯 要 旨
○收入證紙 販賣收益 金은 어떻게 되는 지?	○收入證紙 販賣收益 金 5%를 職場새마 을 金庫에서 管理 함
○收入證紙가 10원권 에서 10,000원권까 지 여러種類가 있 는데 이 많은 種類 의 收入證紙가 다 必要한지?	○各種 民願書類마다 手數料 料金の 種 類가 많으며, 民願 人의 便宜를 위해 여러장의 收入證紙 를 붙이는 것을 1 장으로 붙이도록 하기 위함

4. 討論要旨

가. 찬성(위원 5명전원)

- 民願人의 便宜圖謀를 위해 必要한 收 入證紙의 種類를 늘리는 것으로서 條 例改正에 異議가 없음

나. 반대(반대의견 없음)

5. 審査結果

○原案可決

安山市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提出日字 : 1991. 7. 16

○提 出 者 : 安山市長

나. 回附日字 : 1991. 7. 23回附

다. 上程日字 : 第5回安山始議會(臨時會)
第1次 安山市統長子女獎學
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등
審査特別委員會('91.7.24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社會經濟局長 李壽榮)

○提案理由

不法駐停車 行爲로 인한 過怠料 賦課 金을 從前 一般會計 財源에서 駐車場 特別會計 財源으로 하여 駐車空間 擴 充에 活用코자 함

○主要骨子

道路交通法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 過 怠料를 一般會計 稅入에서 駐車場 特 別會計 稅入으로 함(駐停車 違反時·賦 課額 : 30,000원)

3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問 要 旨	答 辯 要 旨
○私設駐車場이 管内 있는지	○2곳에 있음
○公營駐車場은 몇곳 이 있는지?	○22個所에 있음
○私設駐車場인가시 料金基準은?	○30분당 1,000원으 로 되어 있음
○管内公營駐車場 管 理方案은?	○施設物 管理公園을 設立 推進中에 있 어 이 公園이 設立 되면 管理運營을 맞게 될 것임
○私設駐車場을 어느 곳에나 設置 가능 한지?	○安山市에서는 商業 地域에만 可能함
○22個 公營駐車場은 언제 有料化 되는 지?	○施設公園이 設立되 어 公營駐車場을 管理運營하면 有料 化 될 것임

質 疑 要 旨	答 辨 要 旨
○現在 公營駐車場을 오랫동안 放置해나 하루빨리 有料化하여 잘 管理했으면 좋겠음	

4. 討論要旨

가. 찬성(위원 5명전원)

○날로 增加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駐車難이 加重되고 있어

○不法駐停車로 인한 過怠料 賦課金을 駐車場 特別會計 財源으로 함으로써 駐車場 確保 및 駐車難解消을 위한 財源으로 再投資함이 타당함

나. 반대(반대의견 없음)

5. 審査結果

○原案可決

安山市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提出日字 : 1991. 7. 16

○提 出 者 : 安山市長

나. 回附日字 : 1991. 7. 23

다. 上程日字 : 第5回安山市議會(臨時回)
第1次 安山市統長子女獎學
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等
審査特別委員會('91.7.24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 : 都市課長 李鍾先)

○提案理由

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設置根據인
都市計劃法 第65條 및 道路法 第66條
가 削除됨에 따라 安山市 道路受益者

負擔金徵收條例를 廢止코자 함

○主要骨子

• 安山市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

3. 質疑 및 答辨要旨

質 問 要 旨	答 辨 要 旨
○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要旨說明要	○道路開設 등에 따른 隣近地域의 땅값인 上등으로 인한 受 益者에게 負擔金을 徵收하는 것임. 그 러나 適用한 예가 없으며 실제 必要 치 않음. 또한 開 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內容과 重複되 어 廢止가 當연함
○關係法規와 關聯해 보면 지난해 廢止 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 廢止하는지?	○上級機關에서 全圖 的으로 統一을 기 하기 위하여 이제 廢止하는 것임

4. 討論要旨

가. 찬성(위원 5명전원)

○根據法規의 削除로 하위 法人 關係條
例의 廢止는 理論의 여지가 없다고 봄

나. 반대(반대의견 없음)

5. 審査結果

○原案可決

定數物品取得에 따른 審議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提出日字 : 1991. 7. 16

○提 出 者 : 安山市長

나. 回附日字 : 1991. 7. 23回附